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현장애로 기술해결 지원사업(1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현장애로 기술해결 지원사업(1차)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선도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2. 28.

(재)전북테크노파크 원장

1 개요

사업목적	기업의 애로기술에 대해 공정개선 및 시제품제작으로 해결하여 생산현장의 직무기피 요인 해소 및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을 하고자 함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지정기업(공고일 기준: 44개사)
지원규모	15과제 내외(기업지원금 최대 6천만원 이내) *총사업비 100% = 기업지원금 80% + 민간부담금 20%
지원분야	공정개선 또는 시제품제작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
공고기간	2024. 02. 28.(수) ~ 2024. 03. 22.(금), 17:00까지
접수기간	2024. 02. 28.(수) ~ 2024. 03. 22.(금), 17:00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홈페이지(www.jblc.or.kr)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한도
공정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불량 감소 등을 위한 공정개선 지원 - 공정단축 (현재) ①→②→③→④ ⇨ (개선) ①→②→③ - 수작업 공정을 자동화 공정으로 전환하는 개선활동 - 산업재해, 환경오염 등을 원천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제조공정 개선 	6,000만원 이내
시제품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제품의 기능추가, 개선 및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제작지원 ○ 개발기술의 상용화(상품화 등)를 위한 시제품 제작 	5,000만원 이내

□ 지원방식

구 분	내 용
지원조건	○ 공정개선 또는 시제품제작 중 필요한 분야 한 가지 선택
사업비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비지원금은 총사업비의 80%이내 ○ 기업부담금은 총사업비의 20% 이상(현금) - 총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는 전액 기업 부담
지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지급(이행보증 증권 必) - 사업비 통장은 0원 통장으로 관리

3

지원절차 및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지정기업 44개사

연 번	기업명	연 번	기업명
1	(주)대왕페이퍼	23	(주)미보기아
2	(주)진흥주물	24	부성테크(주)
3	(주)엄지식품	25	(주)위델소재
4	(주)인익스	26	(주)팜조아농업회사법인
5	(주)하이엘	27	(주)씨앤씨어패럴
6	(주)한국선진철도시스템	28	(주)카이테크
7	(주)네오크레마	29	(주)그레넥스
8	(주)디에스엔피	30	(유)와이케이
9	케이넷(주)	31	(주)미래클
10	(유)금란산업개발	32	(주)다스
11	(주)코아스	33	(주)이엔플러스
12	(주)피엘티	34	신한방직(주)
13	(주)코빅스	35	(주)와이에이치에스엔티
14	(주)골드밴	36	농업회사법인(유)휴먼에노스
15	(주)디딤돌	37	(주)셀로닉스
16	지음소프트	38	(주)핀컨퍼니
17	도가테크	39	(주)나노솔루션
18	디와이이노베이트(주)	40	(유)태성이앤씨
19	(주)함소아제약	41	(주)팔복인더스트리
20	나라바이오(주)	42	(주)피앤엘세미
21	(주)신호테크	43	(유)동방이노베이션
22	(주)우성이앤에스	44	(주)세일특수강

□ **제외대상**

구분	비고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대표자, 과제 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여 제재조치 기간인 경우	NTIS 제재조치 여부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사업 참여 및 중복지원금 금지 약속서

- **평가방식:** 발표평가(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 **진행방법:** 수혜기업 총괄책임자가 사업계획서 내용(발표자료-PPT)을 발표 후 평가위원의 질의응답 진행
- **선정기준:** 기준 점수 60점 이상 득점 기업 중 예산 범위 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배점(점)	세부내용
사업추진 역량 (20점)	사업의 필요성	10	-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
	사업의 타당성	10	- 지원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등
목표의 명확성 (30점)	추진내용의 차별성	10	- 사업내용의 혁신성 및 차별성 등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10	- 사업범위 및 목표의 명확성 등
	추진 내용의 실현가능성	10	- 사업계획 상의 추진 내용에 대한 실현 가능성 등
추진방법의 적정성 (30점)	사업 추진방법의 적합성	10	- 추진전략, 연구방법 및 내용의 구체성 등
	사업기간의 적정성	10	- 사업추진 내용과 부합하는 기간 설정 등
	사업비 산정, 사업수행 역량의 적정성	10	- 사업비 산정 및 사업비 집행 항목의 적절성 - 사업책임자 및 실무자 역량 등
파급효과 (20점)	매출 및 이익 가능성	10	- 시장진입 가능성 및 시장규모, 성장성 등
	사업의 파급효과	10	- 고용창출 기술적, 사회적 기요도 등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공고기간: 2024. 02. 28.(수) ~ 2024. 03. 22.(금), 17:00
- 접수기간: 2024. 02. 28.(수) ~ 2024. 03. 22.(금), 17:00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접수처: www.jblc.or.kr(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홈페이지)
 - 세부사업 신청방법

선도기업 메뉴 → 지원사업 신청 → 선도기업 세부사업 → 지원사업 접수

□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사업계획서(지원분야 택1)	한글파일로 제출(**.hwp)
2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	양식참고
3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 금지 협약서	양식참고

접수요령

-  01. 사업계획서(기업명)
-  02.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기업명)
-  03.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 금지 협약서(기업명)



각 서류별 필수 제출
(기업명 기입)

7

유의사항

- 등록기간 내에 전산에 신청하지 못한 기업은 접수 불가
- 기업지원금은 전체 예산규모, 기대효과, 기업부담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정기업(대표자)이 법령, 본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누락하는 경우, 선정 취소, 사업 참여제한,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재부가금**

- ① 허위청구(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 받은 지원금의 5배
- ② 과다청구(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청구하여 받은 경우) : (받은 지원금-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의 3배
- ③ 목적 외 사용(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의 2배

-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혜기업은 지원사업 완료 후 3년까지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하는 성과측정 제반서류(재무제표, 고용보험가입자증명서, 기타 우수사례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함(불성실 제출 시 차후 사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8

문의 및 상담

- (재)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업성장지원팀
손현화 연구원(063-219-2138 / hh5169@jbtp.or.kr)